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1. 의결주문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도로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79호, 2023. 4. 18. 공포, 10. 19. 시행)됨에 따라,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 허가를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에 차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, 종전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제도가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9. 12. ~ 9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5조”를
“「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”로 한다.

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등과의 점용 허가 협의 대상 시설) 법 제61조제2항에서 “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차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)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(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)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.

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1조제2항”을 “법 제6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법 제61조제3항”을 각각 “법 제6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)	제42조(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)
① 법 제42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, 생산자물가상승률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·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「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54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등과의 점용 허가 협의 대상 시설) 법 제61조 제2항에서 “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차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)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(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)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.

제55조(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
공작물 등) 법 제61조제2항에
따라 도로점용허가(법 제107조
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
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
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
인을 말한다)를 받아 도로를 점
용할 수 있는 공작물·물건, 그
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
와 같다.

1. ~ 12. (생략)

제57조(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
용)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
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
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
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도로
또는 교량의 하부에 대한 도로
점용 등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
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
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
는 경우로 한다. 다만, 신청자의
도로점용 목적이 법 제68조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제외한다.

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
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쳐 도로

제55조(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
공작물 등) 법 제61조제3항----

-----.

1. ~ 12. (현행과 같음)

제57조(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
용) ① 법 제61조제4항-----

-----.

② 법 제61조제4항-----

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친다는 뜻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,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·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

[illegible]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917